

-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접수일자 및 제출자 : 1995. 10. 4 — 김 병 근 의원외 10인

나. 회 부 일 자 : 1995. 10. 4 — 의 장

다. 상 정 일 자 : 제46회 제1차 운영위원회 ('95. 10. 4) —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한 기 원 의원)

가. 제 안 사 유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가 '95. 7. 1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어 공인조례도 개정된 위원회명칭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나. 주 요 골 자

○ 사하구의회 공인조례 제2조 제2항 2호 및 3호

현	행	개	정 (안)
○ 총무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		○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	
○ 도시위원회위원장		○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	

다. 관 련 법 규

○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 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는 지난 '95. 7. 1 부산광역시 사

하구 의회 위원회 조례중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총무사회산업위원회는 총무사회 위원회로, 도시위원회는 도시산업위원회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구 의회에서 사용하는 상임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인 명칭도 이와 같이 일치시키는 내용으로의 개정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